

○○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

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원 장

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법령

- ❖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44조의3(납세자보호위원회)
 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(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)이 위촉하는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민간위원"이라 한다)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❖ 「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」 제13조(운영)
 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

○ 상기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아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합니다.

– 직무대행 지명순서 : 20 자로 시행

순서	성명	생년	구분	순서	성명	생년	구분
1				8			
2				9			
3				10			
4				11			
5				12			
6				13			
7				14			